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계획과-17382
등록일자	2015.8.21.
결재일자	2015.8.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구청장
정상섭	주명애	이수진	배경섭	주윤중	08/24 신연희
협조자	공보실장 건설관리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연순 송진영 옥종식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지상변압기함 이용광고물 허가 계획

지상변압기함 이용광고물 허가 추진배경

- 효과적인 시설 관리 필요(도시미관 개선)
- 시설의 안전한 관리

※ 지상변압기함 설치 관리 :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지중설비팀)

지상변압기함 이용광고물 허가 계획

- 허가구간 : 강남대로 (미디어 폴이 없는 구간)
 - 신논현역~ 신사역, 강남역~양재역
- 허가수량 : 10(개소)내외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보도 폭 감안)
 - 부실 관리되고 있는 시설 우선 설치
- 허가규정
 - 광원 직접 노출 금지,
 - 금지사항(범죄행위 정당화하는 내용,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등)
 - 기타사항은 강남구 옥외광고물등의 심의 기준 적용

※ 일부 구간 시범적 설치후, 효과 및 영향을 평가후 순차적 확대 시행.

기대효과

-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구정홍보, 세외수입 효과 등

2015. 8. .

강 남 구
(도 시 계 획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p>관련 규정 및 근거</p>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p>추진 경위</p>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위 :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시설에 광고물을 허가하여 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함. 																											
<p>예산 사항</p>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예산사업 																											
<p>수혜자 및 범위</p>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일반주민 																											
<p>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p>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border="0"> <tr> <td>① 관련부서 협조</td> <td>-----</td> <td>(○)</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td> <td>(○)</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td> <td>()</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td> <td>()</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td> <td>()</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td> <td>()</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td> <td>()</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td> <td>()</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td> <td>()</td> </tr> </table>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p>타 기관 사례</p>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자치구 중 서초, 중구청에서 사업 시행중임. 																											
<p>전문가 자문</p>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지상변압기함 이용광고물 허가 계획

공공시설물인 한국전력 『지상변압기함』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보호시설(외함)에 광고물의 표시를 허가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 하고자 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1항 제2호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등

I

추진배경

□ 효과적인 시설관리 필요

- 낙서, 전단지·벽보 등 불법 광고물 부착되고 있으나 단속이 어려움



□ 시설의 안전한 관리

- 사고 등 외부적 충격 완화시설(보호막) 필요



II

시설물 설치(관리)

□ 지상변압기함의 설치 관리

○ 설치 관리

-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서초구 서초동1355)
- 지중설비팀(02-2105-8397)

□ 지상변압기함 설치 현황(노선별)

구분 개소수	계	강남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학동로	기타
합 계	928	62	65	41	58	65	637

□ 지상변압기함 보호시설 설치

○ 시설(지상변압기)의 안전한 관리(보호)

- 환풍 냉각으로 내부기기 보호
- 외부 충돌 시 정전 등 대형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
- 혹서기 온도 상승방지 시스템 구축

○ 도시미관을 위한 디자인

- 미려한 디자인에 부식 방지를 위한 알루미늄 소재 마감



환풍 시스템으로 안전성 확보



도시미관을 위한 미려한 외관

□ **지상변압기함 보호시설의 순차적 시범 설치**

○ 설치지역 : 강남대로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우선 설치, 점차 강남구 전역 확대

지상 변압기함 미관개선사업 관련법 개정 추진 과정

-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과제로 제언(2008.2)
- 국경위 산하 규제개혁민관합동추진단의 정책과제로 채택(2008.10)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2011.4)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에 관리조례 표준안 통보(2012.3)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2012.9)

※ 미관 관리가 되지 않는 지상변압기함 등 시설의 개선 될 경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Ⅲ 광고물의 표시 허가 계획

□ **광고물 허가 절차**

○ 지상변압기함 보호시설 설치 → 광고물의 표시 허가

신청인 (광고사업자)	접 수 ⇨	심 의 위원회	⇨	결 재	⇨	신청인 (광고사업자)
신청 (신고)	민 원 여권과	본 심 의	⇨	광고물 및 도로점용 허가 처리	⇨	허가(신고필)증 교부

□ **허가계획**

○ 허가 구간 : 강남대로(미디어 폴이 없는 구간)

- 신논현역 ~ 신사역, 강남역~양재역

○ 허가 수량 : 10(개소) 내외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설치(보도 폭 감안)

- 부실 관리되고 있는 시설 우선 설치

○ 허가 구간의 일부(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를 시범적 설치 후
효과 및 영향 등을 평가 후 순차적 허가

○ 수수료(도로점용 및 광고물 허가 수수료) : 1기당 5~60만원 예상

※ 부구청장 주재 정례국장회의 토론회결과(기획예산과-12536, 2015.8.18.)

○ 설치전후 시뮬레이션



□ **광고물 허가 규정**

○ 조 명(광원)

- 광원의 직접 노출 금지
- 빛의 점멸,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금지
- 액정표시는 가능하나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지.

○ 규 격(크기)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조도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 금지사항

-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성차별, 인종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주류, 담배 광고 등)

○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 광고물로 인한 민원이나 공익상 필요시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휴지통, 벤치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을 표시하는 공공시설물은 시장 또는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 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이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형태·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 설치·관리되는 시·구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IV

행정사항

- 지상변압기함 보호시설(외함)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변경허가
→ 건설관리과
- 지상변압기함 이용광고물의 공익(구정홍보)광고 활용사항 검토
→ 공보실
- 구정 홍보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 자치행정과
- 광고물 설치에 따른 구민의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축소) 방안 마련
추진 → 도시계획과

V

기대효과

- 도시미관의 개선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로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 구정홍보 및 관광안내 기능
(시설물의 1/4은 상업광고물, 기타 면은 공익광고 가능)
- 편익시설(와이파이 & 무선 충전 기능 탑재)역할
- 밝은 거리 조성(보안등 역할)
- 세외수입 효과

※ 참고자료

설치 전



설치 후

